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03.0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02.17.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1.02.22.
- 다. 상정일자 :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1.03.0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구 본 수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용범위를 작은 도서관까지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대상, 수강료의 징수기준, 감면기준, 환급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촉진,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구립도서관 설치 및 명칭 (안 제2조)
 -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범위를 작은도서관과

향후 도서관 추가 설치·운영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구립도서관 정의 (안 제3조)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으로 명확히 구분 정의
- “사용료 등” 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를 포함시킴.

3) 도서관 조직 및 인력 (안 제5조)

- 도서관 운영인력에 자원봉사자를 추가하고 자원봉사 실비지급 근거 마련.

4) 도서관 운영위원회 (안 제8조)

- 운영위원 대상을 문화계, 교육계, 관계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보완하고, 위원임기를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5)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안 제10조)

-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조항 정비

6) 사용료 등 징수 관리 (안 제11조)

- 수강료 징수기준, 감면기준, 환급규정 보완

7) 기증자료 관리 (안 제15조)

- 기증도서 처리 조항 추가

8)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방안 보완 (안 제18조)

-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범위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용범위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고, 도서관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대상 및 임기, 수강료의 징수기준, 감면기준, 환급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0 본 조례안 중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중 “따른”은 뒤에 연결되는 본문 내용과 관련해 볼 때 “따라”로 해야 어문 규정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안 제2조제2항에서 “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며,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분리하여 규정할 경우 도서관법령과 맞지 않아 혼선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이하 「도서관법」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이를 “「도서관법」”으로,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에서 “명칭”은 “세부 명칭”으로, “별도로 정한다.”는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안 제3조제1호에서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기준인 건물면적 264㎡ 이상인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으나 “공공도서관”은 안 제2조와 같이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은 다음 조문인 안 제3조제2호와 제11조제2항에 인용조문이 있으므로 이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수정을 요함.

안 제3조제2호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제1호다목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건물면적과 열람석, 도서관자료 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제3항에서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문 체계상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6조에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안 제2조에서 구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소속 관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구에서 구성·운영하는 것인지 혼선이 야기되므로 관련 조문을 정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로 각각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11조제1항에서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액 및 징수기준, 감면기준, 환급규정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배치되고 있어 조문정리가 필요함.

안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나. 이용자 감면기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에서 등록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행한 보호자 1명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나. 이용자 감면기준 중 “「한부모가정법」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가족”에서 2007년 10월 17일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잘못 규정된 「한부모가정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저소득의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